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31호 2022. 10. 25.(화)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2-142호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고시 1
- 남해군 고시 제2022-143호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고시 ... 6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2-1251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2
- 남해군 공고 제2022-1274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1
- 남해군 공고 제2022-1283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27
- 남해군 공고 제2022-129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9
- 남해군 공고 제2022-1303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6
- 남해군 공고 제2022-1308호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43
- 남해군 공고 제2022-1309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 남해군 공고 제2022-1310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5
- 남해군 공고 제2022-1311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 남해군 공고 제2022-1312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남해군 공고 제2022-1315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4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42호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지정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월포항	남면 석교리 149-5	해일위험	나	5,850	해안시설의 지반고가 낮아 태풍 발생시 해일범람 및 월파에 의한 도로 시설 및 주거지 침수 등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	이전
월포	남면 석교리 149-5 ~ 당항리 31-6	해일위험	나	46,334		변경

나. 지정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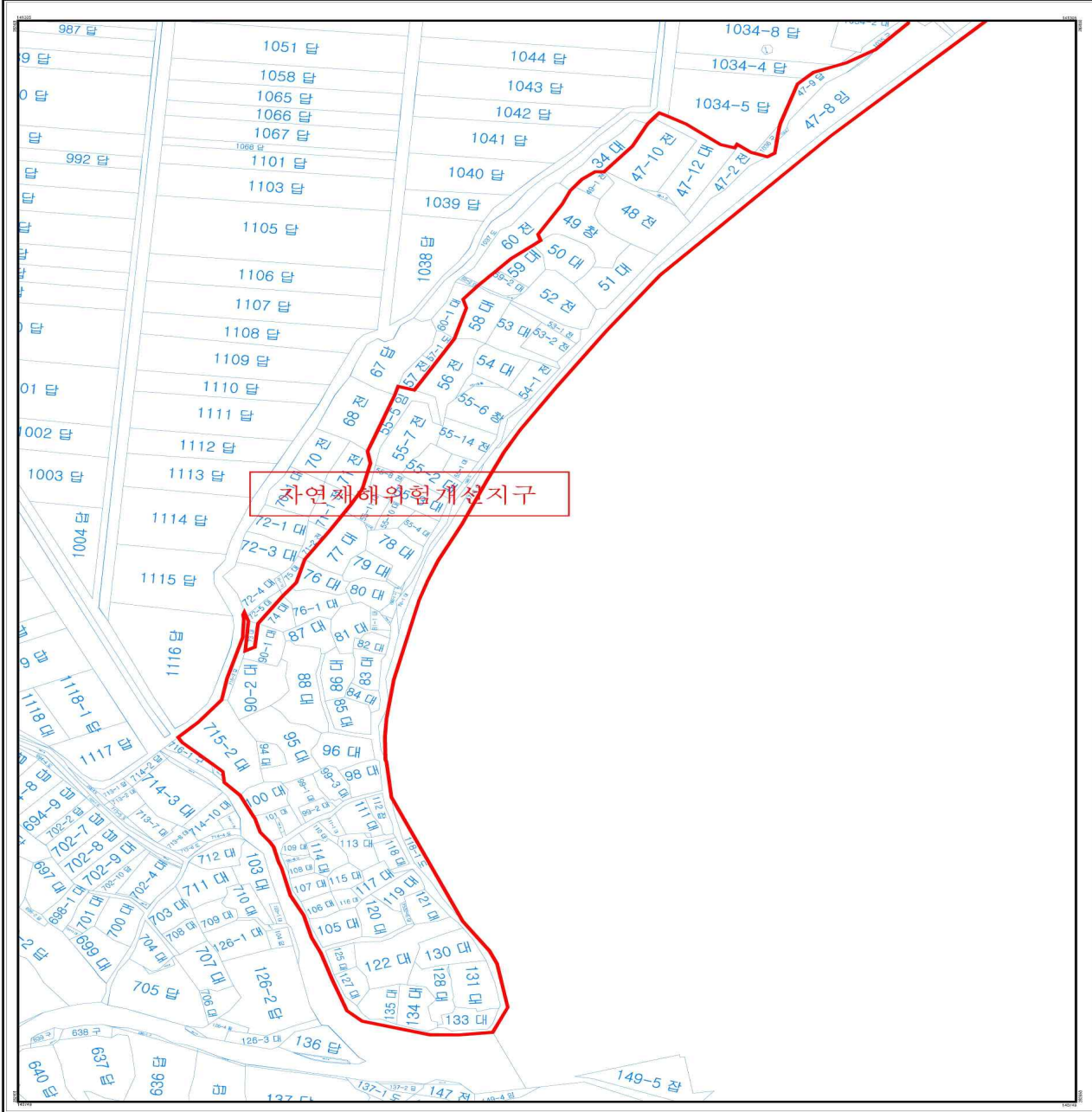
3. 지역·지구 효력 등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생략(붙임 참조)
-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도(1)

1 : 5,000 지형도



- 행정구역 : 남 해 군
- 지정권자 : 남 해 군 수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 해 군 수

- 명 칭 : 월포 지구
- 유 형 : 해일위험지구
- 등 급 : 나등급
- 면 적 : 46,334m²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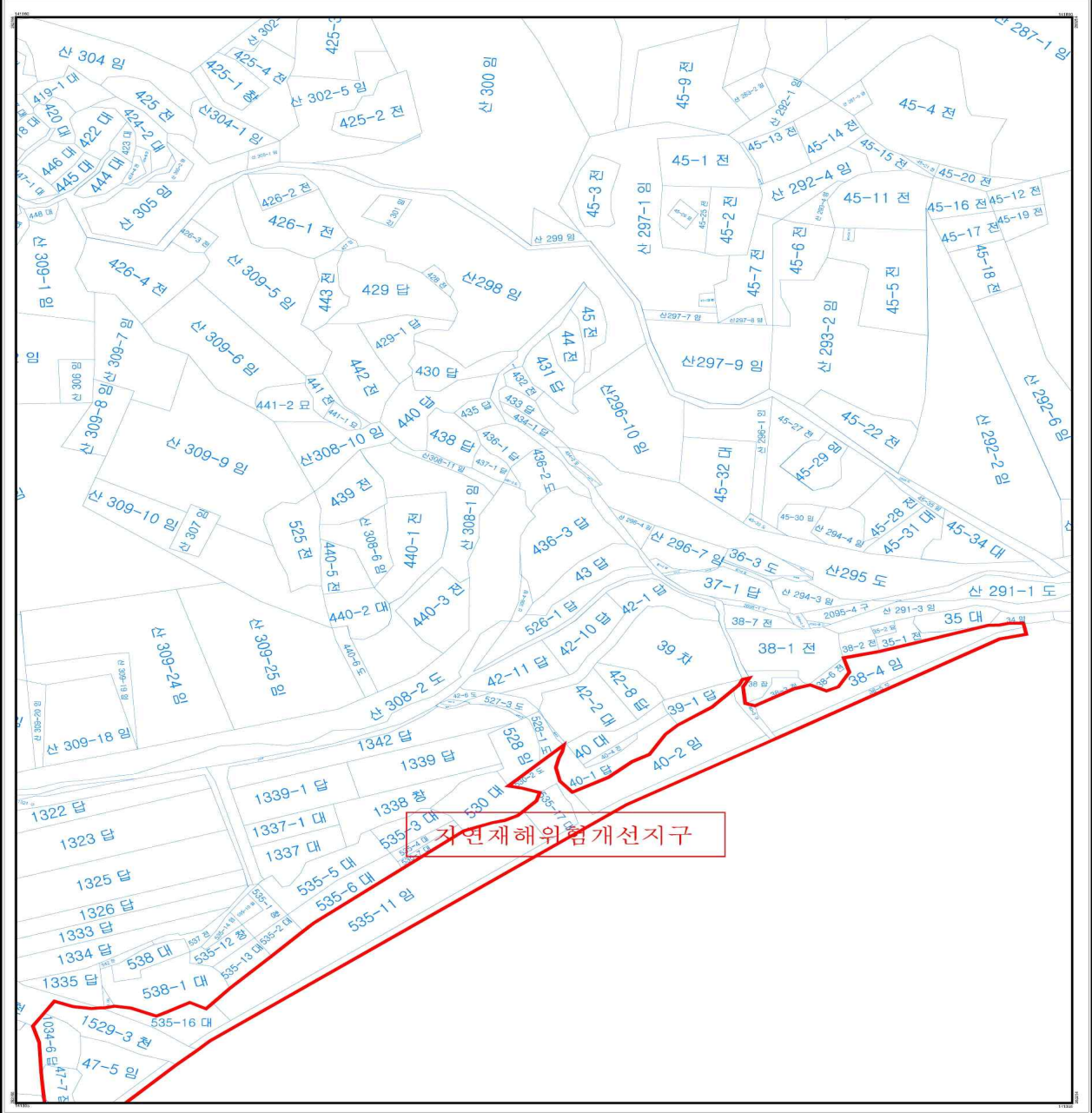
□ 지적선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도(2)

1 : 5,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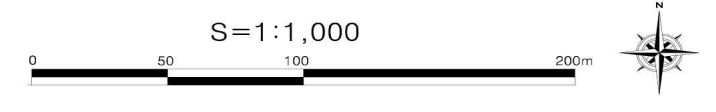


- 행정구역 : 남 해 군
- 지정권자 : 남 해 군 수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 해 군 수

- 명 칭 : 월포 지구
- 유 형 : 해일위험지구
- 등 급 : 나등급
- 면 적 : 46,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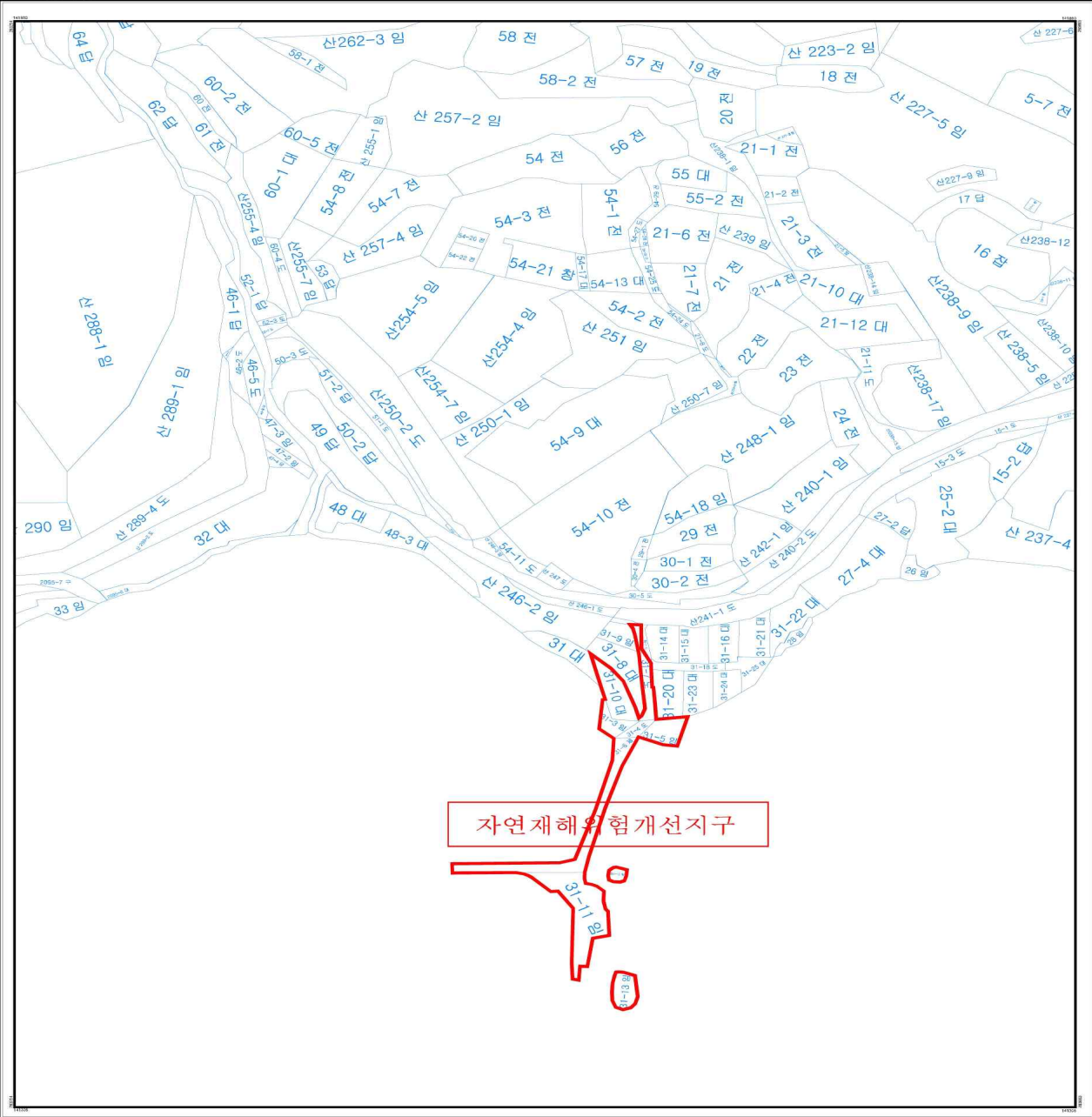
범 례

	지 적 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도(1)

1 : 5,000 지형도



- 행정구역 : 남 해 군
- 지정권자 : 남 해 군 수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 해 군 수

- 명 칭 : 월포 지구
- 유 형 : 해일위험지구
- 등 급 : 나등급
- 면 적 : 46,334㎡

- 범 례
- 지적 선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남해군 고시 제2022-143호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활성화 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개요(변경)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개요 및 범위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오시다	중심시가지형	200	2019~2023 (5년간)
	사업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북변리 157일원		사업면적 198,703㎡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경상남도 남해군, 한국관광공사			
사업 필요성	남해군 중심지인 남해읍의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역이 쇠퇴하고 주변 면지역에 형성된 관광자원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도시 기능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및 효과	마중물(8개 사업), 부처연계(1개 사업), 지자체(4개 사업)			상세 ③ 참조
재원조달방안	548,94억원(국비 120.00억원, 지방비 80.00억원, 부처연계(29 8.00억원, 지자체 17.93억원, 민간 33.01억원)			상세 ⑤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상세 ⑥ 참조

- 활성화계획 도면

활성화계획도(당초)



활성화계획도(변경)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세부내용

비전	공간의 재생과 함께 문화·관광적 특징을 매개로 지역활성화
목표	삶의질 향상/도시경쟁력 회복/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548.94	
마중물 사업	소계	200.00	
	1. 창생플랫폼 조성	85.68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생플랫폼 조성(변경) · 지역특화상점 조성(변경) · 통합관광콘텐츠 개발 · 아쿠아리움 영상 개발 ·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변경) · 공간별 운영주체 교육
	2.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	30.00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변경) · 관광창업아카데미 교육(변경)
	3. 관광특화가로 조성	2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특화가로 조성 · 화전 플라마켓
	4. 가로환경 개선	11.23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 통학로 조성 · 안심골목길 조성
	5. 주민휴게공간 조성	2.83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개선 · 휴게공간 개선
	6.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특화상점 조성 · 아간푸드페스티벌 운영 · 시장 특화 브랜드 개발 및 운영
	7. 청년문화공방 조성	20.50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공방-1(바라)(변경) · 청년문화공방-2(다랑)(변경) · 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주체 컨설팅 및 교육
	8.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	18.56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역량강화 · 거버넌스 구축 · 주민공모사업 · 지역축제 및 이벤트 개최 · 아간경관 개발 · 보물여행 프로그램 개발 · 건축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부처연계 사업	소계	331.00	
	LPG배관망 지원사업	331.00	· 남해읍 LPG 배관망 설치 지원
지자체 사업	소계	17.94	
	1. 아간경관 조명사업	5.00	· 남해읍 일대 아간경관 거리 조성
	2. 문화우물 사업	0.07	· 마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3. 남해전통시장 플라마켓	6.27	· 남해전통시장내 상사적 플라마켓 및 프로그램 운영
	4. 청년상인점포지원사업	6.60	· 지역청년 대상 창업 공간 및 컨설팅 지원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 창생플랫폼, 관광창업아카데미, 관광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남해읍의 관광허브 역할 회복 및 관광활성화 유도
- 가로환경개선, 주민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활력공간 제공
-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청년문화공방 조성을 통한 대학과 청년을 지원하고 지역자산을 특화
-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의 능력을 개발하여 남해의 관광을 활성화함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규모	사업내용	비고
플랫폼 센터	창생플랫폼 조성	85.68	남해읍 북변리 246-21, 247, 248-1, 248-2, 248-3, 248-17	1,173.48㎡ (연면적)	신축	변경
공공·문화 체육시설	관광창업 아카데미 조성	30.00	남해읍 북변리 248-9, 248-16	1,294.00㎡ (연면적)	리모델링	변경
교통시설	관광특화가로 조성	23.20	남해읍 남변리 349-1 ~ 북변리 284-41	600m	도로 재포장, 미디어폴 2개, 스마트 가로등 5개, 보안등 6개 설치	변경
교통시설	가로환경 개선	11.23	남해읍 북변리 160-8, 232-2, 249-24 ~ 250-4, 209-1 ~ 89-11	485m	도로 재포장, 스마트가로등 3개, 보안등 10개 설치	변경
휴게공간	주민 휴게공간 개선	2.83	남해읍 북변리 157	101㎡ (연면적)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변경
빈점포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8.00	남해읍 북변리 246-1	116㎡ (빈점포 4곳)	빈점포 리모델링	변경
공공·문화 체육시설	청년문화공방 조성	20.50	남해읍 서변리 1, 64	바라 162.02㎡, 다랑 261.16㎡	리모델링	변경

※ 위 내용은 사업추진 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제10호) "도시재생기반시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 다.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⑤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합계	548.94	285.60	230.33	-	-	33.01	
마중물 사업	소계	200.00	120.00	80.00	-	-	-	
	창생플랫폼 조성	85.68	51.41	34.27	-	-	-	변경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	30.00	18.00	12.00	-	-	-	변경
	관광특화가로 조성	23.20	13.92	9.28	-	-	-	
	가로환경개선	11.23	6.74	4.49	-	-	-	변경
	주민휴게공간 개선	2.83	1.70	1.13	-	-	-	변경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8.00	4.80	3.20	-	-	-	
	청년문화공방 조성	20.50	12.30	8.20	-	-	-	변경
	관광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18.56	11.14	7.42	-	-	-	변경
부처 연계사업	소계	331.00	165.00	132.40	-	-	33.00	
	LPG배관망 지원사업	331.00	165.00	132.40	-	-	33.00	
지자체 사업	소계	17.94	-	17.93	-	-	0.01	
	야간경관 조명사업	5.00	-	5.00	-	-	-	
	문화우물사업	0.07	-	0.06	-	-	0.01	
	남해전통 폴리마켓	6.27	-	6.27	-	-	-	
	청년상인점포지원사업	6.60	-	6.60	-	-	-	변경

⑥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48.94	158.03	255.98	37.31	74.35	23.28	
마중물 사업	소계	200.00	26.86	42.31	35.94	72.98	21.91
	국비	120.00	15.29	25.43	22.11	46.03	11.14
	지방비	80.00	11.57	16.88	13.83	26.95	10.77
	공기업	-	-	-	-	-	-
	기금	-	-	-	-	-	-
	민간	-	-	-	-	-	-
부처 연계 사업	소계	331.00	123.70	207.30	-	-	-
	국비	165.60	61.92	103.68	-	-	-
	지방비	132.40	49.48	82.92	-	-	-
	공기업	-	-	-	-	-	-
	기금	-	-	-	-	-	-
	민간	33.00	12.30	20.70	-	-	-
지자체 사업	소계	17.94	7.47	6.37	1.37	1.37	1.37
	국비	-	-	-	-	-	-
	지방비	17.93	7.46	6.36	1.37	1.37	1.37
	공기업	-	-	-	-	-	-
	기금	-	-	-	-	-	-
	민간	0.01	0.01	-	-	-	-

㉑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가. 사업 평가 및 점검 계획

구분	지표	산정방법	조사방법	자료수집	비고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	생활 지원시설 공급	만족도 변화율	설문 + 면담	연1회	변경
		이용자 수 변화율	현장조사	연1회	변경
	빈집 정비	빈집 및 빈 상가 정비	현장조사	연1회	변경
	노후건축물 비율 감소	노후건축물 정비율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자료 활용	연1회	변경
도시활력 회복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변화율	설문 + 면담	연1회	
	유동인구	주요 상권 유동인구 변화율	상권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연1회	
	매출액	주요 상권 매출액 변화율		연1회	
	거점공간공급	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설문 + 면담	연1회	변경
첨단기술 적용	첨단기술 적용 시설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1회		변경	
일자리 창출	민간창업	남해읍 민간 창업 건수 변화율	남해군청 자료 활용	연1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조직		연1회	변경
	일자리(민간부문)	민간부문 고용자 수 변화율	정보공개포털 자료 활용	연1회	변경
	일자리(공공부문)	공공부문 고용자 수 변화율	남해군청 및 센터자료 활용	연1회	변경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인구 유입률	전년 대비 인구 유입률	남해군청 자료 활용	연1회	
	주민참여 활동 건수	주민참여 활동건 수 변화율	센터자료 활용	연1회	변경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참여 정도 변화율	설문 + 면담	연1회	변경
	이웃과의 소통	이웃과 소통 정도 변화율		연1회	변경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 신뢰 정도 변화율		연1회	변경
	지역 소속감 정도	지역 소속감 정도 변화율		연1회	변경
	주민협의체 만족도 향상	주민협의체 만족도 변화율		연1회	변경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변화율	연1회			
도시경쟁력 향상	방문객 수 증가	전년 대비 방문객 수 변화율		남해군도시재생 빅데이터 사업 자료 활용	연1회

㉒ 도시재생특별법 제 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위치	기간	사유	행위제한 내용
해	당	없	음

㉓ 관련서류 열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나. 열람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
-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055-860-3238)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251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시행 2022. 7. 5.)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안 제3조 ~ 제4조)

-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 · 이행

- 다. 지속가능성발전 위원회(안 제5조 ~ 제13조)
 -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 및 심의를 위해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
 - 위원의 임기·해촉·제척 사항 등 명시
 - 위원회 위원 등에게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14조 ~ 제17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보급하며,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공표 의무화
 -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의무화
- 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안 제18조 ~ 제32조)
 - 협의회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9월 29일 ~ 10월 19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환경물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우)52413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2층, 남해군청(환경물관리단)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53, FAX :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환경정책팀(☎055-860-3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의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군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과 지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 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20년 단위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본전략 및 국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자체 평가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5조(남해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해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 관련 비위, 품위 손상 등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는,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간사를 두며, 지속가능발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의 목적 달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및 조사, 연구, 분석 활동 인력에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부서 관계자, 공무원 등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보완을 생략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조례 제·개정 의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14조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1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8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기구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
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5.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③ 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총회)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이행계획의 평가 및 보고
- 2. 연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협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
-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3조(조직) 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 3. 총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6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행·재정적 지원)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는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31조(재원)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의 보조금
2. 군민, 협의회 회원, 기타 후원금

제3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2-1274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병을 예방하고 접종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종류 및 횟수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 예방접종 지원 신청절차 및 환수 사항 규정(안 제4조, 제7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등을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0월 6일 ~ 10월 26일(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2413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 전화 : 055-860-8776, FAX : 055-860-879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홈페이지(<https://www.namha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감염병예방팀(☎055-860-87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 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지원기준)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 2. 제1호 외의 사람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 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경우 수급자는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6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해군 _____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 접종자 현황

접종자 이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방접종 신청현황

발급기관		발급일	
접종기간	발급일부터 7일간 유효함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보건소 문의

남 해 군 수

남해군 _____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 접종자 현황

접종자 이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방접종 신청현황

발급기관		발급일	
접종기간	발급일부터 7일간 유효함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보건소 문의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고 제2022-1283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공공하수도 명칭 : 화계지구 신규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2. 사용개시일 : 2022년 1월 10일

3. 하수처리구역

- 편입지역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화계지구 신규마을
- 편입면적 : 0.0271km²
- 관로연장 : 635m

4.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25

5. 설계수질 및 설계 유입 용량

○ 설계수질

(단위:mg/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방류수질	3.5	10	3.5	8	0.7

○ 설계 유입 용량 : 35m³/일

6.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7. 관련도면 열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 (☎055-860-3613)

남해군 공고 제2022-129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년 10월 17일

남 해 군 수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2. 10. 7.

2. 사유

-폐기 및 등록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 폐지 및 신설·변경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기획성 과담당관분임 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기획성과 담당관
남해군기획성 과담당관일상 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행정지원담당관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행정지원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공공건축추진단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공공건축추진단
남해군공공건축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환경물관리단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환경물관리단
남해군환경물관리단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주민복지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주민복지과
남해군주민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인 체육진흥과 민원전용	2.1cm 정사각형	폐기		체육진흥과
남해군체육진흥과 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체육진흥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청년혁신과 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청년혁신과
남해군청년혁신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문화관광과 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문화관광과
남해군문화관광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지역활성화 성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지역활성과
남해군지역활성화 성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해양수 산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해양수산과
남해군해양수 산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기획조 정실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기획조정실
남해군기획조 정실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행정과 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행정과
남해군행정과 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핵심전 략추진단분임 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핵심전략추 진단
남해군핵심전 략추진단일상 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환경과 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환경과
남해군환경과 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상하수 도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상하수도과
남해군상하수 도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복지정 책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복지정책과
남해군복지정 책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주민행 복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주민행복과
남해군주민행 복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관광진흥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관광진흥과
남해군관광진흥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문화체육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문화체육과
남해군문화체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경제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경제과
남해군경제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해양발전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해양발전과
남해군해양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산자원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수산자원과
남해군수산자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 공고 제2022-1303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위법행위에 등에 대한 법적대응(안 제8조)
- 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4,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55-860-3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해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
 - 나. 공무원직근로자
 - 다. 기간제근로자
 -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한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 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치료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예산의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1시간 범위 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부서장 판단으로 필요시 연장가능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5조제1항제7호	예산의 범위 내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진료비 및 약제비), 계약서 등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2-1308호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법률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제3조)
- 나. 상담범위, 방법 및 상담실 운영(안 제4조 ~ 제6조)
- 다. 법률상담관 위촉 및 세부운영 방법 등(안 제7조 ~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1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남해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2회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법률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5.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 방문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상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일지

상담 번호	상담 일자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확인
제20 - 호	20 . . .	(인)	(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 주 지		
	연 락 처		
상담 분야			
상담 요청 내용		상담 처리 결과	

남해군 공고 제2022-1309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기간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중 생략 가능한 사유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 생략 가능사유와 통일화 (안 제4조)

나.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5조, 제8조, 제2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1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의 참여” 를 “남해군민의 참여” 로, “군민의 권익증진” 을 “남해군민의 권익증진”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군민의 권리·의무” 를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지 아니” 를 “생략 또는 단축”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입법안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례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 2. 그 밖에 법령인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10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호 등 주민 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법정리 구역 변경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 3. 주요내용
 - 가. 남해읍 북변리, 상주면 양아리 관할구역 변경
 - 나. 별표 리 명칭과 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남해읍	북 변 리	북변리 일원
상주면	양 아 리	양아리 일원



읍면별	리명	관할구역
남해읍	북 변 리	북변리 일원, 아산리 중 아산리 1412-12번지
상주면	양 아 리	양아리 일원, 상주리 중 상주리 산444번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해읍 북변리 관할구역란 중 “북변리 일원” 을 “북변리 일원, 아산리 중 아산리 1412-12번지” 로 하고, 같은 표 상주면 양아리 관할구역란 중 “양아리 일원” 을 “양아리 일원, 상주리 중 상주리 산444번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11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 2. 개정이유 :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1리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행정리 명칭 변경 : 홍현1 → 홍현(반, 구역 변동 없음)
 - 나. 별표 남해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개정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1	3	1-3	일원	
		무지개	2	1-2	"	
		가 천	2	1-2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	3	1-3	일원	
		무지개	2	1-2	"	
		다랭이	2	1-2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의 행정리별란 중 “홍 현1” 을 “홍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12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 2. 개정이유 :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1리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남면 홍현리 관할구역 명칭 변경 : 홍현1 → 홍현
- 나.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1, 무지개, 다랭이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 무지개, 다랭이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리의 관할구역란 중 “홍현1” 을 “홍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15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사단 법인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설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 재원 조성, 사업, 이사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 설립의 목적, 설립·운영 및 출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재단 임원, 이사회, 사무국, 파견·겸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라. 재단의 예산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0월 18일 ~ 11월 8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행정과 교육협력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63, FAX : 055-860-38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육협력팀(☎055-860-3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남해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 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참 고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2014.5.28. 개정 (2016.1.1. 시행)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시·군·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관할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8. 19.>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 목적을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